

#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0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9월 27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구덕 · 김기만 · 남재경 · 최호정 ·  
김경자(강서) · 유동균 · 장인홍 ·  
김춘수 · 김광수(노원) · 김혜련 의원  
(10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3조)
- 나.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,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3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정부조직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시의원·공무원”을 “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서울특별시의회 의원·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5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은 <u>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시의원·공무원</u>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 략)</p> 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<u>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35조(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<u>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</u>이 고시</p>	<p>제7조(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학계·언론계·기업계·민간단체·서울특별시의회</u> 의원·공무원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 <u>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</u> 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5조(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</u>---</p>

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----.